

한·미 자유무역협정 섬유 및 의류산업 원산지 규정에 대한 고찰

A Focus on Textile and Apparel chapter in the KORUS FTA Rules of Origin

박도준(Do-Joon Park)

경기벤처협회 경기벤처고용지원센터 자문위원/
교수, 경영학박사

목 차

- | | |
|-----------------------------------|----------|
| I. 서 론 | V. 결 론 |
| II. 섬유산업 동향과 교역현황 | 참고문헌 |
| III. FTA와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 | Abstract |
| IV. 한·미 FTA 원산지 규정의 주요 내용 | |

Abstrac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review KORUS FTA Rules of Origin. Although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erms of structure and contents, KORUS FTA Rules of Origin i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other FTA's texts that Korea has already concluded.

Textile and Apparel chapter is also separately specified. For textile and apparel goods, Korea and the US agreed to adopt 'yarn-forward rule', allowing exceptions for certain goods. Both sides also agreed to introduce procedures for permitting to use non-Party's materials when fibers · ryarns · rfabrics are not available in commercial quantities.

Overall evaluation on KORUS FTA is considered to be positive. Economically, KORUS FTA is expected to provide good opportunities for Korean companies to access the US market. Politically, Korea and the US can take advantage of KORUS FTA to reinforc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Key Words : KORUS FTA, Rules of Origin, Fiber-Forward, Yarn-Forward, Fabric Forward, Wholly Obtained or Produced, Substantial Transformation, De Minimis, SME, TPL.

I. 서 론

2008년 7월 현재 발효 중인 지역무역협정의 숫자는 200여 개에 이르고 있으며,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¹⁾.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2003년 이래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칠레, 싱가포르, EFTA²⁾, ASEAN³⁾등 15개국과 FTA 체결을 완료하였고, 미국과는 FTA 협상 타결 후 국회비준동의를 준비 중이며, EU, 캐나다, 인도, 멕시코, 일본 등과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이다.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는 그동안 다자협상 위주의 통상정책에서 벗어나 이제 동아시아의 FTA 허브로서 발돋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FTA 대상 국가도 북미, 남미, 동남아시아, 유럽 등지에 분포되어 있어 명실 공히 세계 각 지역을 아우르는 FTA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고 있다. 또한 그 내용면에서도 상품무역 분야에서의 시장접근 분야만이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국내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다.

지난 2007년 4월 2일 타결된 미국과의 FTA는 우리나라의 FTA 로드맵⁴⁾상 목표로 설정되어 있던 거대 경제권과의 첫 번째 FTA로서 우리나라의 FTA 로드맵에 의하면 1차적으로 국내산업에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칠레, 싱가포르 EFTA 등과의 FTA를 통하여, 협상 노하우 및 국내 대책에 관한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 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준비하도록 하고 있는데 미국과 FTA를 타결한 것은 이러한 로드맵의 수순을 밟아 거대 경제권과 최초로 FTA 협정을 타결한 것이며 이를 통하여 향후 다른 거대 경제권과의 FTA도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한국 상품이 국제시장에서 일본 등과 경쟁하고 중국의 맹렬한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 하에서 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는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시장을 확대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FTA를 통하여 한국 상품에 대한 관세장벽이 낮아지고, 한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제고됨으로써 세계 각지에서 수입된 상품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미국시장에서 한국 상품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미국과 FTA를 맺고 싶어 하는 다른 나라보다 먼저 FTA를 타결함으로써 시장 선점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서비스 산업의 경우에는 미국과의 FTA를 통하여 선진제도의 수입과 이를 통한 국내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제도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그 효과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미국과의 군관한 경제동맹관계를 통하여 국제신인도를 높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외국자본의 투자도 유치할 수 있을

1) 2007년 3월 현재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RTA) 발효건수는 194건이며 이중 자유무역협정(FTA)은 117건으로 가장 많으며 서비스협정이 44건, 개도국간 특혜무역협정이 19건, 관세동맹이 14건을 차지하고 있음.

2)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는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의 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1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우리나라 FTA 로드맵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을 참조: 「우리나라 FTA 로드맵과 보완과제」, (전국경제인연합회, 2004.11). 한-미 FTA가 FTA로드맵에 따라 추진되었다는 보도는 동아일보, 2006년4월11일자 참조.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국과의 FTA를 통하여 동아시아 경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한편 이를 통한 중국에 대한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⁵⁾. 하지만 일부에서는 한·미 FTA는 우리나라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시장개방이며, 미국과 협상을 통하여 상호이익의 균형을 맞추기는 애당초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미 미국의 관세율이 낮기 때문에 한·미 FTA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크지 않은 반면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이 급증하여 우리나라 농업은 큰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한다⁶⁾. 한·미 FTA에 대한 논란은 협상초기부터 협상과정 내내 국내에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었다. 하지만 한·미 FTA가 타결된 이제는 FTA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을 뒤로 하고, 한·미 FTA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미 FTA 협정문 중에서 우리나라에게 이득이 될것이라고 주장하는 섬유 및 의류분야에 대한 협정문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섬유 및 의류 분야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원산지 규정 협정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원산지 규정 협상은 관세자유화와 더불어 상품협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협상인 만큼 한·미 FTA 원산지 규정 협정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그 의미와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섬유산업 동향과 교역현황

1. 세계 섬유산업 현황과 한국의 위상

1) 세계 섬유산업 현황

세계 전체 화섬생산량은 2000년 2,622만 톤에서 2005년에는 3,169만톤으로 연평균 3.9%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주요 국가별로는 중국이 2005년 현재 세계 화섬 생산의 44.9%를 차지하며 세계 제1위의 화섬생산국이다. 중국은 2000년 615만 9,000톤에서 2005년에는 1,423만 6,000톤을 생산하여 2000-2004년 기간에 연 평균 18.2%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중국 화섬업계는 생산설비의 맹목적인 확대로 화섬업계의 생산 능력 과잉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따라 화섬 생산라인의 가동률이 점차 낮아지고, 원료가의 상승으로 수익성 저하가 초래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화섬 생산 증가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다

5) 한미 FTA의 정치적 의미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조. 유현석, “한미 FTA의 정치적 의미: 영향과 고려사항”, 「한미 FTA 공청회 자료집」, 2006.2.2, p.p.17-29.

6)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한미 FTA 국민보고서」, 그린비, 2006.

음으로는 대만과 미국의 화섬생산량이 2005년 현재 세계 화섬생산량의 각각 9.8%, 8.4%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세계 화섬생산량의 5.2%를 차지하고 있는데, 2005년 현재 165만 5,000톤을 생산하여 2000-2005년 동안에 연평균 9.0%의 감소율을 나타냈는데 이는 중국과의 경합관계가 높은 우리나라 화섬이 중국과의 가격경쟁력 격차를 극복 못하고 세계주요 수출시장을 잠식당한 결과이다.

〈표 II-1〉 주요국의 화섬 생산 추이

(단위 : 천톤, %)

		2000	2003	2005	연평균증가율 (2000~2004, %)
1	중국	6,159 (23.5)	10,456 (35.5)	14,236 (44.9)	18.2
2	대만	3,123 (11.9)	3,061 (10.4)	3,091 (9.8)	-0.2
3	미국	3,149 (12.0)	2,693 (9.1)	2,627 (8.3)	-3.6
4	한국	2,646 (10.1)	2,241 (7.6)	1,655 (5.2)	-9.0
5	서유럽	2,262 (8.6)	2,006 (6.8)	1,769 (5.6)	-4.8
6	일본	1,308 (5.0)	1,030 (3.5)	955 (3.0)	-6.1
세계		26,129 (100.0)	29,435 (100.0)	31,686 (100.0)	3.9

출처 : www.istans.or.kr

한편, 세계 주요국의 면사생산 추이를 살펴보면 우선 세계 전체 면사생산량은 2000년에 약 1,950만 톤에서 2005년에는 약 2,500만톤으로 2000-2005년 동안에 연평균 5.1%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2005년 면화 공급이 충분하고, 면방기술의 지속적인 발전, 화섬직물과의 혼방직물 수요증가, 웰빙 열풍에 의한 순면제품 수요 증가 등의 요인으로 면사 생산이 화섬생산 증가율을 능가하였다.

주요 국가별로는 중국이 2005년 현재 세계 면사 생산의 48.7 %를 차지하는 세계 제1위의 면사생산국이며, 다음으로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세계 면사생산량의 9.6%,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터키와 미국은 2005년 세계 전체 면사생산의 각각 5.2%, 4.5%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2〉 주요국의 면사 생산 추이

(단위: 천 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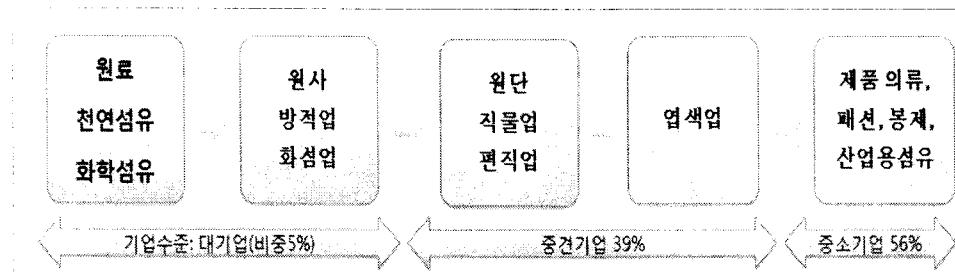
		2000	2005	연평균증가율 (2000~2005, %)
1	중국	6,575.7	12,145.4	13.1
2	인도	2,290.0	2,400.1	0.9
3	파키스탄	1,706.7	2,243.6	5.6
4	터키	1,005.0	1,289.8	5.1
5	미국	1,895.4	1,119.9	-10.0
6	브라질	778.3	951.0	4.1
7	인도네시아	417.3	406.7	-0.5
8	멕시코	406.2	375.3	-1.6
9	태국	299.2	359.5	3.7
10	러시아	272.0	261.9	-0.8
세계		19,490.1	24,960.1	5.1

출처: www.istans.or.kr

2)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구조와 위상⁷⁾

우리나라의 섬유산업은 원자재의 1/3을 해외에서 수입, 가공하여 완제품을 만들어 그 완제품의 2/3를 해외로 수출하는 해외의존형,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 생산구조는 원료·사·직물·염색·의류·제조·유통으로 이어지는 다단계로 형성되어 있고 고용창출효과와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가공산업이라 할 수 있다.

〈그림 II-1〉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구조

출처: <http://www.kofoti.or.kr>7)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홈페이지(<http://www.kofoti.or.kr/info/textile01.php>)

섬유산업은 국가 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핵심 기간 사업으로서 전후방 파급효과가 높은 우리나라 최대 고용산업으로 전체 산업 생산의 4.1%, 고용의 8.9%, 업체수의 14.2%를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핵심 기간 산업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주력 외화가득산업이자 수출산업으로 무역수지는 '02년까지 매년 100억불 이상의 흑자를 기록한 산업이다.

〈표 II-3〉 섬유산업 일반 현황(2006년)

구분	업체수 (개사)	고용 (천명)	생산액 (10억원)	부가가치 (10억원)	수출 (07년/억불)
제조업	119,181	2,911	912,763	326,844	3,715
섬유산업 (비중)	16,891 (14.2)	259 (8.9)	37,460 (4.1)	15,156 (4.6)	134 (3.6)

자료 : 통계청, 무역협회(수출은 우리나라 전체)

우리나라 섬유산업은 국제적으로는 세계 6위의 섬유수출국('05년)이다. 구체적으로 수출 세계 6위 (2.7%), 화섬직물 수출 세계 2위(8.1%), 편직물 수출 세계 3위(13.3%), 화섬생산 세계 5위(5.4%)로서 섬유수출 순위는 중국, EU, 터키, 미국, 인도, 한국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섬유산업은 국민의 의(衣)생활을 선도하는 주요 생활산업으로서 국내 패션 의류산업은 섬유제조 19,000개, 패션 Shop 및 패션몰 등이 20,000개 이상으로 전국적 유통망을 형성하고 있어 국민 경제생활에 기여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2. 한·미 섬유산업 교역현황

1) 대미 수출현황

섬유산업의 대미 수출은 미국의 NAFTA 체결이후 크게 감소하였으나, 1997년 이후 환율상승에 따른 수출경쟁력 회복등에 힘입어 소폭 상승하였다. 그러나 2000년 들어 중국산 저가 의류제품에 의해 대미 시장 잠식이 가속화되었고, 2004년 말 섬유 퀼터제의 폐지는 저가 중국제품의 대미 수출을 크게 증가시켰다. 이로 인해 우리의 대미 수출은 2001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하였다.

품목별로는 섬유원료, 원사 및 직물의 대미수출은 1990년의 4.6억불에서 2006년 9.8억불로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섬유사는 1990년대 중반이후 화섬장 섬유를 중심으로 높은 신장세를 보였으나 2000년대 들어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경쟁심화로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직물의 경우 주력수출 품목인 화섬장섬유직물이 중국, 터키, 필리핀 등 개도국들의 생산능력 확충으로 2000년대 들어 감소세

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섬유제품 수출의 경우도 1995년 35억불에서 2006년 9.4억불로 급감하였다. 특히 의류의 경우는 1/5수준으로 급감하였다.

〈표 II-4〉 한국섬유산업의 품목별 대미 수출추이

(단위: 백만불/ %)

	1990	1995	2000	2004	2005	2006	대미수출비중
화섬원료	29	118	88	145	164	165	8.3
섬유사	18	45	122	108	147	128	6.4
직물	417	499	808	768	758	758	38.0
의류	3,150	1,746	2,277	1,544	1,046	762	38.2
기타섬유제품	346	308	300	276	212	182	9.1
합계	3,959	2,717	3,596	2,842	2,327	1,995	100

자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알기쉬운 섬유산업 FTA. FTA EXPO 2007. p.18 재편집

2) 대미 수입현황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대미 수입은 1990년대 중반이후 2억불 수준에서 변동이 없는 상태이다. 이처럼 미미한 이유는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경우 섬유사, 직물을 수입하여 의류 등 섬유제품으로 가공하여 수출하는 구조로서 수입섬유소재를 대부분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조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II-5〉 한국섬유산업의 품목별 대미 수입추이

(단위: 백만불/ %)

	1990	1995	2000	2004	2005	2006	대미수출 비중
화섬원료	21.4	30.3	27.1	27.6	25.9	20.1	9.2
섬유사	44.4	70.0	66.0	72.4	58.1	35.7	16.3
직물	35.2	80.4	72.2	51.4	54.3	58.0	26.4
의류	5.7	39.4	20.3	32.8	45.3	49.7	22.7
기타섬유제품	16.6	46.2	34.2	45.5	53.6	55.8	25.4
합계	123.4	266.3	216.4	229.7	237.0	219.4	100

자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알기쉬운 섬유산업 FTA. FTA EXPO 2007. p.19 재편집

III. FTA와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

1. 원산지 규정의 의미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이란 물품의 국적을 정하는 기준을 정하는 제규정을 의미한다⁸⁾. 원산지 규정은 비특혜원산지 규정과 특혜원산지 규정으로 구분되는데, 비특혜원산지 규정은 최혜국대우,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원산지 표시 등에 사용되며, 특혜원산지 규정은 FTA 또는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등 관세특혜를 부여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하 본 고에서 언급하는 원산지 규정은 특혜원산지 규정을 의미한다⁹⁾.

FTA상 원산지 규정은 특히 그 중요성을 가지는데, 그 이유는, FTA상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은 물품에 대하여만 FTA에 의한 특혜관세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산지규정 협상은 관세자유화 협상과 더불어 FTA 협상 상품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협상으로 일컬어진다. 관세자유화를 고속도로에, 원산지 규정을 톨게이트(Toll-Gate)에 비유하여 설명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좋은 고속도로를 건설해 놓더라도 톤게이트(Toll-Gate)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고속도로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빠른 시간 내에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이치와 같이, 아무리 상대국과 관세자유화에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해당물품이 FTA상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 자유화의 혜택을 누릴 수 없게되어 FTA의 의미가 크게 반감된다.

원산지 규정은 국내산업 보호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도 작용한다¹⁰⁾. 원산지 규정은 표면적으로 보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당 산업에 대한 생산형태 및 산업구조와 관련된 정책적 판단과 결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원산지 판정과 관련하여 역내 부품을 일정 수준 이상 사용하도록 규정한다면 해당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 부품업체의 생산 및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역외 부품사용을 제한함으로써 기업들이 해외에 건설한 생산기지로부터의 부품조달이 제한되어 기업들의 세계화 경향과는 배치되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원산지 기준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개별 산업 생산형태, 산업구조, 교역구조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산지 기준을 엄격하게 하느냐, 혹은 느슨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FTA가 각각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게 된다. 또한 원산지 규정은 FTA 협상상대국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FTA 협상상대국과의 교역량 및 산업의 분업화 정도에 따라 원산지 기준이 엄격해 질 수도 있고, 느슨한 형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협상과정을 반영하여 FTA에 따라 서로 다르게 규정되

8) WTO Agreement on Rules of Origin, Article 1.1.

9) Ibid. Article 1.2 및 Annex II Article 2 참조.

10) 정인교 외, 「우리나라 FTA 원산지 규정(ROO) 연구 및 실증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05.11, p.p.33-36

는 원산지 기준은 경우에 따라 무역업자들에게 부담이 되기도 한다. 각국에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원산지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국가별로 각각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FTA 협상과정에서 되도록이면 동일한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¹¹⁾.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원산지 규정은 간접적으로 외국인투자의 유입을 유인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¹²⁾.

예를 들면 FTA 원산지 기준에 주요 부품을 역내산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면, 지금까지 국내에 부품을 수출하던 역외국가는 해당 상품의 수출이 어려워 질 것이므로, 결국 국내에 부품공장을 건설할 유인이 생길 수 있다. 원산지 규정 협상은 이렇듯 개별 품목 및 산업에 대한 정책적 판단과 맞닿아 있어 그 기준을 정하는 협상과정이 만만치 않다.

원산지 규정 협상을 맡게 되는 원산지 분과의 경우 대개 다른 분과의 협상보다 먼저 시작하고 다른 분과의 협상보다 늦게까지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원산지 규정 협상이 FTA 타결의 마지막 협상이 되는 경우도 많다. 협상과정에서 협상국들은 원산지 협상을 관세자유화와 연계하여 관세자유화에는 합의하고도, 원산지 기준을 엄격하게 함으로써 그 효과를 형해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기도 한다.

흔히 언론에는 관세자유화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하기 때문에 해당 물품의 관세가 철폐되거나 감축되면 기업들은 FTA 상대국가에 대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게 되는데, 실제로 자유화가 달성되어 시장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수출기업이 상대국가에 수출할 물품이 FTA상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알 수 있다.

2. 원산지 규정 협정문의 구성

FTA협상에서 원산지 규정 협상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 번째 부분은 원산지 규정 협정문에 대한 협상이고, 두 번째 부분은 품목별 원산지 기준(Product Specific Rules of Origin)에 대한 협상이다. 원산지 규정 협정문은 보통 14~20여 조문으로 구성되는데, 주로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원칙 조항과 결정기준 충족을 위한 계산공식, 누적, 직접운송 원칙 등이 포함된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통상적으로 (1)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or Produced" Rule)과 (2) 실질변형 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Rule)으로 구분된다¹³⁾. 완전생산기준이란 보통 가공농산물을 제외한 기초농수산물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협정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을 의미한다.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다는 의미는 협정문에 보다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쉽게 설명하면 당사국에서 나고 자란 동물이나 당사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 당사국에서 채취된 광물 등을

11) FTA 협정문마다 원산지 기준이 달라서 생기는 영향을 스파게티 보울 효과(spaghetti bowl effect)라고 한다. 스파게티 보울 효과의 문제점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조. Jagdish Bhagwati, 'Free Trade Toda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2)

12) 정인교 외, 전케서, pp.35-36.

13) WTO 통일원산지 규정에서는 원산지 기준을 크게 완전생산기준과 실질변형기준의 둘로 나누고 있으며, FTA에서도 원산지 결정기준을 규정하는 조항에서 완전생산기준과 실질변형기준을 나누어서 명시하고 있다. WTO Agreement on Rules of Origin, Article 9 및 한·미 FTA 제6.1조 참조.

의미한다.

실질변형기준이란 주로 공산품에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협정 당사국내에서 이른바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만 당사국이 해당 상품의 원산지로 인정받게 된다. 실질변형을 판정하는 방식으로는 세 번 변경기준(Change of Tariff Classification Rule), 부가가치기준(Regional Value Contents Rule), 특정공정기준(Specific Process Rule) 등이 있다. 세번변경기준이란 재료를 수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생산과정에 사용된 재료의 세번과 최종제품의 세번이 일정단위 이상 변경된 경우에 실질변형을 인정하는 기준이다.

세 번이란 품목에붙이는 고유의 번호를 말하는데, 통상적으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코드)를 사용한다¹⁴⁾. 예를 들어 HS 코드 4단위 변경(CTH)¹⁵⁾이 원산지 기준이라고 가정할 때, HS 코드가 2709인 원유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정을 거쳐 HS 코드가 2710인 석유를 생산하였다면 HS 코드의 네 자리 단위가 변경되게 되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부가가치기준이란 수입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생산과정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하면 그 생산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예를 들어 수입재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에서 생산공정을 거쳐 최종제품을 생산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가 창출되었다면 우리나라가 원산지 국가가 된다.

특정공정기준이란 특정한 공정(재단·봉제공정 등)을 거쳐 생산된 경우에 그 특정공정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예를 들어 수입산원단을 들여와 우리나라에서 재단·봉제 공정을 수행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한 경우 우리나라가 원산지 국가가 된다. 통상적으로 협정문에서는 원산지 판정에 대한 원칙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개별 품목에 관한 원산지 기준(이른바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부속서(Annex)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HS 코드에 의하여 분류된 수천여개의 품목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보통 국제적으로 동일하게 사용되는 HS코드 여섯 자리 단위를 기초로 한 5,000여 품목을 대상으로, 생산과정, 교역패턴 등을 감안하여 그 개별품목 각각의 원산지 기준을 정하게 된다. 품목수가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품목별 원산지 기준 협상은 장기간이 소요되며, 국내 산업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품목의 경우에는 협상 막바지에 극적으로 타결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14)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약칭 HS 코드)란 통계산출, 과표근거, 통관조건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물품마다 부여하는 국제기준의 코드를 말한다. HS 코드는 6단위까지는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지만, 6단위 이하의 사용에 있어서는 각국에 재량이 부여되며 우리나라에는 현재 10단위까지 사용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용어 검색 참조.

15) HS 코드 4단위 변경은 CTH(Change of Tariff Heading)이라고 하며, 6단위 변경은 CTS(Change of Tariff Sub-Heading), 2단위 변경은 CC(Change of Chapter)라고 한다.

IV. 한·미 FTA 원산지 규정의 주요 내용

1. 협정문의 체계

한·미 FTA의 원산지 규정 협정문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체결한 FTA 원산지 규정 협정문에는 없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특혜관세대우 신청”(제6.15조), “증명 또는 그 밖의 정보의 면제”(제6.16조), “기록유지요건”(제6.17조), “검증”(제6.18조), “수입관련의무”(제6.19조), “수출관련의무”(제6.20조), “공동지침”(제6.21조) 등의 내용이 원산지 규정 협정문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종래 동 내용들을 원산지 규정 장(Rules of Origin Chapter)과는 별도로 통관절차 장(Customs Procedure Chapter)에 포함시켜 두고 있었다. 한·칠레, 한·싱가포르 FTA 등 우리나라가 기존에 체결한 FTA 협정문을 살펴보면, 동 내용들이 통관절차 장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¹⁶⁾.

반면 미국은 미·싱가포르, 미·호주 FTA 등 기존 FTA 협정문에서 동 내용들을 원산지 규정 장에 포함시켜 왔다¹⁷⁾. 이러한 차이는 원산지 규정 협정문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온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은 원산지 규정 장에서는 FTA상의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 상품을 정하는 기준만을 규정하고, 그 이외의 절차적인 내용들은 모두 통관절차 장에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미국은 원산지 규정 장에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 상품의 기준 뿐 아니라 동 상품들에 대한 특혜관세 신청절차까지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¹⁸⁾.

표면적으로 체계는 다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내용들이 원산지 규정 장에 포함되어 있든, 통관절차 장에 포함되어 있든 그 실제 적용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한·미 FTA에서는 제6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라는 제목 하에 절을 나누어 제1절에서는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을, 제2절에서는 “원산지 절차(Origin Procedures)”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FTA 협상의 결과 양쪽 입장을 절충하여, 종래 우리나라가 통관절차 장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원산지 규정 장에서 규정하기는 하지만, 원산지 규정 장에서 별도의 절로 독립하여 규정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다.

현재의 원산지 규정 협정문 구조는 협상의 결과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정한 형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체계면에서 볼 때 또 한 가지 특기할만한 것은 섬유 장(Textile and Apparel Chapter)이 별도로 규정되어

16) 한·칠레 FTA 제5장 통관절차(Customs Procedures), 한·싱가포르 FTA 제5장 통관절차 (Customs Procedures) 등 참조.

17) 미·싱가포르 FTA Chapter 3. Section B, 미·호주 FTA Chapter 5. Section B 등 참조.

18) 미국은 특혜관세와는 무관한 통관절차에 대한 내용들을 따로 둑어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Trade Administration and Trade Facilitation)”이라는 제목 하에 별도의 장에서 다루고 있다.

있다는 점이다.

한국이 기존에 체결한 FTA 협정문에서는 섬유를 따로 분리하여 별도의 장으로 규정한 전례가 없었다.

한국은 원산지와 관련된 내용 및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은 원산지 규정 장에서, 세관협력과 관련된 내용은 통관절차 장에서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섬유산업이 자국의 민감한 산업임을 내세워 기존 FTA에서 섬유분야를 별도의 장으로 만들고 섬유 장에서 섬유와 관련 된 긴급 수입제한조치(Special Safeguard Actions), 원산지 관련 사항(Rules of Origin and Related Matters), 그리고 세관협력(Customs Cooperation), 품목별 원산지 기준(Product Specific Rules of Origin)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 일반적인 원산지 규정

한-미 FTA에서는 통상 여타의 FTA에서 규정되는 누적, 최소허용수준, 직접운송, 포장재료 및 용기, 세트, 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 간접재료 등 일반적인 규정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누적이란 상대국의 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 판정시 해당 재료를 자국산인 것처럼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원산지 기준 충족을 용이하게 하는 규정을 말한다¹⁹⁾.

누적 조항은 FTA원산지 조항 중 핵심조항의 하나라고 할수 있다. 누적 조항을 통하여 FTA 체결 국가간 재료·부품의 교역을 활성화하고 투자 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소허용수준(De Minimis)이란 해당물품이 양국이 합의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역외산 재료가 물품가격의 일정 비율 미만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원산지를 인정해 주는 원칙을 말한다. 한-미 FTA에서는 역외산 재료의 허용비율을 가치 기준으로 10% 미만으로 규정하였다²⁰⁾. 섬유에 대한 최소 허용수준은 별도로 섬유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비율은 중량기준 7% 미만으로 규정하였다²¹⁾.

한미 양국은 수출물품이 생산국에서 수입국으로 바로 운송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만약 한미 양국이 아닌 제3국을 경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경유국에서 단순하역 작업 또는 물품의 보존·운송에 필요한 작업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물품을 경유국 세관당국 통제 하에 두도록 규정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물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합의하였다²²⁾. 이를 직접 운송원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직접운송원칙은 실무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원칙적으로 원산지 기준이란 FTA체결국에서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난 것을 전제로 하여 해당 국가에만 특혜관세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이다.

19) 한-미 FTA 제6조 5항

20) 한-미 FTA 제6조 6항

21) 한-미 FTA 제4조 2항 및 제7항

22) 한-미 FTA제6조 13항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물품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지 않고,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유국에서 추가적인 가공이 이루어지거나 제3국산 물품이 섞여 들어와 원산지 둔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아무리 원산지 기준을 정교하게 규정하더라도 운송과정에서 제3국산 물품이 원산지 물품으로 둔갑한다면 FTA로 인한 효과가 크게 반감되게 된다.

따라서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 물품은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불가피하게 제3국을 경유할 때에는 보존·운송에 필요한 작업 등 제한적인 작업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두었다.

상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에 대하여는 그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수송용과 소매판매용으로 구분하여,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는 원산지 상품을 결정하는 데 고려하지 않는 반면, 소매판매를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는 역내 부가가치 포함 비율 산정시 고려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²³⁾.

세트물품과 관련하여, 한-미 FTA에서는 세트를 구성하는 물품 중에서 비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세트 가격의 15% 이하인 경우에는 세트전체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²⁴⁾. 섬유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섬유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비율은 10%이다²⁵⁾.

상품의 시험·검사나 상품생산과 관련된 설비의 유지 등에 사용되는 연료·도구·부품 등 간접재료에 대한 원산지 판정 기준과 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에 대한 원산지 판정 기준들은 기존의 여타 FTA에서와 동일하게 한-미 FTA에서 규정되었다²⁶⁾.

한-미 FTA 원산지 협정문 중 특기할 만한 것은 불인정공정(Non-Qualifying Operation)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불인정공정 규정이란 단순하고 경미한 과정을 거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하여는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는 원칙을 말한다. 예를 들면, 화강암(2516)을 분쇄하여 자갈(2517)을 만드는 경우, 원산지 기준이 세 번 변경기준이라면 세 번이 변경되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것이 되지만, “분쇄”공정을 불인정공정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공정은 실질변형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기준에 체결한 FTA 협정문에서는 불인정공정의 근거규정 및 유형을 협정문에 규정하였으나, 한-미 FTA 협정문에서는 불인정공정 규정을 협정문에 두지 않고, 개별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서 이러한 불인정공정을 반영하도록 규정하였다. 본래 불인정공정을 품목별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러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그 특성 및 생산과정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협상 상대국과 해당물품의 특성 및 생산과정을 품목별 기준에 세세히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편의상 품목별 기준에 반영하기보다는 협정문에 불인정공정의 예를 규정하고, 개별 품목이 그러한 불인정공정을 통하여 생산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여 왔다.

23) 한-미 FTA 제6조 10항 및 11항

24) 한-미 FTA 제6조 9항

25) 한-미 FTA 제4조 2항 및 8항

26) 한-미 FTA 제6조 8항 및 12항

그러나 한-미 FTA를 통하여 이러한 불인정공정의 유형과 과정이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개별적으로 반영·규정됨으로써,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보다 정교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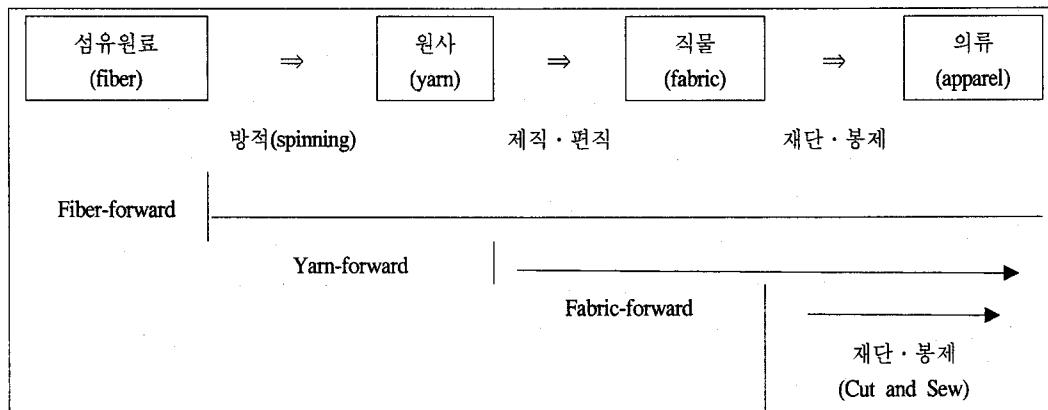
3. 섬유·의류제품에 대한 원산지규정

섬유 및 의류 산업은 한국이 미국에 대해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산업 이지만 미국에 있어서는 매우 민감한 산업이다. 따라서 미국은 동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에 체결한 FTA 원산지 규정에서 섬유·의류제품에 대하여, “원사기준(yarn-forward rule)²⁷⁾”이라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왔다.

원사기준이란 직물이나 의류 생산시 반드시 역내에서 생산된 원사를 이용하여야 하는 요건이다. 섬유·의류를 만드는 제조공정을 살펴보면, 섬유원료(fiber)를 방적하여 원사(yarn)를 만들고, 원사를 제작 또는 편직하여 직물(fabric)을 만들고, 직물을 재단·봉제하여 의류(apparel)를 생산하게 된다.

따라서 원사기준이란 의류의 재료가 되는 직물을 만들기 전 단계인 원사 즉 “실”을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역내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매우 까다로운 요건이다.

특히 이러한 엄격한 기준은 원사 및 직물을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가공 후 재수출하는 우리나라 섬유·의류산업의 생산구조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기준이었다.



출처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알기쉬운 섬유산업 FTA. FTA EXPO 2007. p.49

<그림 IV-1> 섬유·의류 제조공정별 원산지인정 방식

27) 원사기준(yarn-forward rule)이란, 협정 당사국산 ‘실’을 사용하여 직물을 제작(또는 편직)하고 직물 및 의류 등 섬유 완제품을 재단·봉제하여야만 동 제품의 원산지를 인정하는 제도로, NAFTA를 비롯하여 미국이 체결한 FTA에서 고수하여 온 원산지 원칙임.

우리나라가 체결한 기존의 FTA에서는 섬유·의류제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재단·봉제기준을 적용하여 왔다. 즉 제3국산 실이나 직물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하여 왔다.

다만 원사나 직물 생산단계에서부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화학섬유 같은 분야는 원사요건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분야도 있었다.

결국 협상의 관건은 우리나라가 원사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품목이외에 주로 제3국에서 원사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조하는 품목 중 얼마만큼의 예외를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표 IV-1〉 한·미 FTA 섬유분야 원사관련 원산지 규정

구 분	품목/ HS Code	소 재 (Item)	주 요 공 정			
			Fiber (견, 모, 면, 인조섬유 등)	Yarn (Spinning)	Fabric (Weaving or Knitting)	재단/봉제 (Cutting & Sewing)
원사	견사 (5004-5006)	견				
		모				
		면				
		식물성섬유				
		인조섬유				
	양모사 (5106-5110)	견				
		모				
		면				
		식물성섬유				
		인조장섬유사				
		인조단섬유				
	면사 (5204-5207)	견				
		모				
		면				
		식물성섬유				
		인조섬유				
	기타 식물성섬유 (5306-5308)	견				
		모				
		면				
		식물성섬유				
		인조섬유				
	인조장섬유사 (5401-5406)	견				
		모				
		면				
		식물성섬유				
		인조섬유				

인조단섬유사 (5508-5511)	견				
	모				
	면				
	식물성섬유				
	인조섬유				

주 1: [] : 원산지 판정기준의 시작점을 의미합니다.

주 2: 인조장섬유는 Filament를 의미하며 원산지 인정을 위해서는 역내에서 방사를 해야합니다.

주 3: 인조단섬유의 Fiber는 Filament를 단섬유로 잘라낸 것을 의미합니다.

주 4: 원산지 판정을 위해서는 위에 언급된 주요 공정을 포함해 그 이후의 모든 공정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출처 : <http://www.kofoti.or.kr>

한-미 FTA 협상시, 우리측은 원칙적으로 원사기준에 반대하면서 특히 국내 섬유업계의 관심 품목에 대하여 원사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미국측과 협상을 진행하였다. 협상 결과 리넨직물, 합섬여성재킷 및 합섬 남성셔츠, 폴리에스터섬유, 폴리에스터사, 기타 순견직물, 기타 합성섬유, 기타의 직물 및 기타 인조섬유 장섬유사 등의 품목에 대하여 원사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다²⁸⁾.

〈표 IV-2〉 한·미 FTA 섬유분야 직물류 관련 원산지 규정

구 분	품목/ HS Code	소 재 (Item)	주 요 공 정			
			Fiber (견, 모, 면, 인조섬유 등)	Yarn (Spinning)	Fabric (Weaving or Knitting)	재단/봉제 (Cutting & Sewing)
직물	견직물 (HS5007)	견				
		모				
		면				
		식물성섬유				
		인조섬유				
직물	모직물 (5111-5113)	견				
		모				
		면				
		식물성섬유				
		인조장섬유				
		인조단섬유				

28) 한-미 FTA 부속서 4가 참조

면직물 (5208-5212)	견				
	모				
	면				
	식물성섬유				
	인조장섬유				
	인조단섬유				
기타 식물성섬유직물 (5309-5311)	견				
	모				
	면				
	식물성섬유				
	인조섬유				
장섬유직물 (5407-5408)	견				
	모				
	면				
	식물성섬유				
	인조섬유				
장섬유직물 (5512-5516)	견				
	모				
	면				
	식물성섬유				
	인조장섬유				
	인조단섬유				
편직물 (6001-6006)	견				
	모				
	면				
	식물성섬유				
	인조섬유				

주 1: : 원산지 판정기준의 시작점을 의미합니다.

주 2: 인조장섬유는 Filament를 의미하며 원산지 인정을 위해서는 역내에서 방사를 해야합니다.

주 3: 인조단섬유의 Fiber는 Filament를 단섬유로 잘라낸 것을 의미합니다.

주 4: 원산지 판정을 위해서는 위에 언급된 주요 공정을 포함해 그 이후의 모든 공정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표 IV-2〉 한·미 FTA 섬유분야 의류 및 기타 품목 관련 원산지 규정

구 분	품목/ HS Code	소 재 (Item)	주 요 공 정			
			Fiber (견, 모, 면, 인조섬유 등)	Yarn (Spinning)	Fabric (Weaving or Knitting)	재단/봉제 (Cutting & Sewing)
의류	편직제 의류 (HS 61류)	견				
		모				
		면				
		식물성 섬유				
		인조장섬유				
		인조단섬유				
	직물제 의류 (HS 62류)	견				
		모				
		면				
		식물성 섬유				
		인조장섬유				
		인조단섬유				
기타	안감직물					

주1) 원산지 판정기준의 시작점을 의미합니다.

주2) 인조장섬유는 Filament를 의미하며 원산지 인정을 위해서는 역내에서 방사를 해야합니다.

주3) 인조단섬유의 Fiber는 Filament를 단섬유로 잘라낸 것을 의미합니다.

주4) 원산지 판정을 위해서는 위에 언급된 주요 공정을 포함해 그 이후의 모든 공정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한편으로 미국은 과거 체결한 FTA에서 FTA 상대국에게 일정기간 동안 제3국산 원사 및 원단을 사용한 의류제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TPL²⁹⁾제도를 도입해 왔다³⁰⁾. 따라서 우리나라도 한·미 FTA에서 이러한 TPL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미국을 설득하였다. 협상 결과 한미 양측은 공급이 부족한 원료의 역외조달을 허용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직물·의류에 대해 각 최대 1억 SME(Square Meter Equivalent)³¹⁾까지 역외산 원료 조달이 허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³²⁾.

29) 관세특혜물량, Tariff Preference Level

30) 미-로코, 미-바레인, 미-싱가포르 FTA 등에서 도입하였고 미-호주 FTA에서는 도입하지 않았다.

31) 섬유 및 의류의 계산단위를 제곱미터로 환산한 단위

한-미 FTA 협정문에서는 이를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섬유원료·원사 및 원단”³³⁾이라고 지칭하였다. 이번에 한-미 FTA에 도입된 TPL제도는 미국이 기존의 FTA에서 부여하여온 TPL과는 다소 다른 점이 있다. 예를들면 관세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원료의 공급부족을 인정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TPL이 적용되는 절차를 살펴보면, 이해관계인은 특정 원료·원사·원단의 공급이 부족하여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하지 않다는 사실과 관련 정보를 수입국에 제공하고, 수입국은 이에 기초하여 공급부족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³⁴⁾. 그리고 다른 이해관계인의 반대가 없을 경우, 당해 원료·원사·원단을 공급부족 원료 리스트에 등재하고 동 원료의 역내조달을 허용하게 되는 것이다³⁵⁾.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생산된 상품에 대하여는 원사요건에도 불구하고 특혜관세를 부여하게 된다.

한-미 FTA에서 규정된 TPL 물량은 직물·의류 각 1억 SME 상당으로 여타 FTA에서 규정된 물량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물량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 수출업체가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³⁶⁾.

이러한 TPL제도는 일종의 예외적인 규정이므로, 그 준수여부를 엄격히 감시하게되며 만약 수출국의 수출자, 생산자 등이 섬유·의류 무역에 관한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수입국은 상기 1억 SME의 물량에서 불법행위 연루 물량의 3배까지의 물량을 공제할 수 있다³⁷⁾.

한-미 FTA에 규정된 TPL 제도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발효 후 5년이며 양국 간 협의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³⁸⁾. 한-미 FTA 협상에서 섬유·의류 제품에 대한 원산지 기준 협상결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을 것이다.

한-미 FTA에서 상당수 품목에 대하여 원사기준이 적용됨으로써 저가의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 후 수출하고 있는 우리 섬유·의류업체에게는 FTA의 실익이 상당히 제한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발효시 원사의 역내조달 확대, 원사기준의 예외활용 등으로 특혜관세 수혜비율이 80% 이상이 될 전망이다. 또한 원사기준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이른바 TPL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우리나라 섬유·의류 수출업체의 숨통을 트이게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값싼 중국산 섬유·의류제품이 미국시장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원사나 직물을 수입하여 재단·봉제 후 수출하는 현재의 생산 구조는 앞으로 지속하기 어려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첨단 고부가가치 의류제품의 생산에 눈을 돌리고, 그 재료가 되는 고급소재를 개발하는데 힘을 쏟아, 첨단 의류 제품의 경우 원자재에서 최종상품 생산까지 국내 관련 산업의 수직적 분업화

32) 한-미 FTA 부속서 4-나 제5항 및 제6항

33) “Fibers, Yarns, and Fabrics not available in commercial quantities”

34) 한-미 FTA부속서 4-나 제1항 및 제12항

35) 한-미 FTA부속서 제12항

36) 미-모로코 FTA 제4조 3항

37) 한-미 FTA 부속서 4-나 제8항

38) 한-미 FTA부속서 4-나 제10항 및 제13항

가 가능하도록 노력 할 필요가 있다.

< 표 IV-4> 미국 기체결 FTA시 양허 및 TPL 제공 수준

	허용여부	품 목	물 량	내 용	기 간
대 한국	△ (공급부족 선 행)	직물	1억 SME	특혜관세	5년 (연장가능)
		의류	1억 SME		
대 호주	X	-	-	-	-
대 모로코	○	직물	3,000만 SME	특혜관세	13년
		면제품	100만 kg		
대 싱가폴	○	면/인조의류	2,500만 SME	관세감축	8년
대 바레인	○	면/인조직물	6,500만 SME	특혜관세	10년
대 칠레	○	면/인조직물	100만 SME	특혜관세	무기한
		면/인조의류	200만 SME		
대 CAFTA	○ (니카라과)	면/인조의류	1억 SME	특혜관세	9년
	○ (코스타리카)	모직의류	5,000만 SME	관세 1/2 감축	2년
	X (여타국가)	-	-	-	-

출처: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알기쉬운 섬유산업 FTA. FTA EXPO 2007. p.52

V. 결 론

일부 반대론자들의 주장도 있지만 한-미 FTA는 대체적으로 성공적인 협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미 FTA를 통하여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중요한 교두보를 마련함과 동시에, 그동안 다소 소홀했던 한미 동맹관계도 복원하여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위치를 다져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미 FTA 협정이 타결 그 자체에 그쳐서는 곤란하다. 한-미 FTA 타결은 통상의 길을 닦아 놓은 것에 불과하며, 앞으로 이를 발판으로 삼아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가 우리 앞에 남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미 FTA의 성과를 위

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준비하고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한·미 FTA 협정문의 철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하여 FTA 체결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 살펴보았듯이 한·미 FTA 원산지 규정 협정문 특히 섬유 및 의류 분야의 경우 큰 틀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체결한 기존의 협정문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산지 규정 협정문에서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원칙조항, 원산지 결정기준충족을 위한 계산공식, 누적, 최소허용수준, 대체가능 상품 및 재료, 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 세트, 포장재료 및 용기, 간접재료, 직접운송 등 기존 FTA 원산지 규정 협정문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내용이 모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내용과 형식면에서 일부 새롭게 규정된 사항들이 있다.

내용면에서는 섬유의 원산지 및 세관사항 및 제반절차에 대하여 별도의 장과 부속서에서 규정함으로써 종래 모든 품목의 원산지 기준을 원산지 규정장과 그 부속서(품목별 원산지 기준)에서 규정하여 왔던 것에서 변화되었다. 이와 같이 기존의 협정문과 내용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련 업계에 지속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각 정부부처 또는 외교통상부에 이행과정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는 담당부서(담당관)를 두어, FTA 협정 체결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산업구조의 조정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제3국에서 원사를 수입하여 최종상품으로 가공, 수출하던 방식을 고수해 온 섬유·의류 분야의 경우, 원사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FTA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변화를 섬유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중국과의 가격경쟁을 감안할 때,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품목은 점차 저개발 국가에 양보하고, 화학섬유 등 첨단 소재 개발 및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품목별로 규정된 원산지 기준이 향후 산업구조조정 및 교역 패턴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FTA 체결당사국간의 교역규모·산업구조·관세율 및 민감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국내적으로 민감한 품목의 경우에는 역내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규정하여 미국으로부터의 수입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엄격한 원산지 기준은 한편으로 향후 국내 재료의 공급이 어려울 경우 수출가능성이 붕괴될 위험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최근의 글로벌 소싱(Global Sourcing) 경향과 국제분업을 통한 경쟁력 확보 추세를 감안할 때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제3국산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향후 산업구조변경에 따른 수출가능성을 열어 놓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넷째, 한·미 FTA의 국회비준동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한·미 FTA는 협상 타결 후 양국의 국내사정으로 인하여 아직 비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미 FTA는 1년여의 협상기간 동안 양국 모두 국내적으로 치열한 찬반양론 속에 어렵게 타결된 결과물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미 FTA는 양국에 경제적 효과 뿐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에서도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만약 한-미 FTA가 국회에서 정파적 이익에 희생되어 협상을 완결하고도 이행이 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곤란하다. 그 이행과정에서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 제시는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그 비준단계에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미 FTA의 출범을 위하여 여야가 서로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머니투데이, 2006년 3월 19일자.

문준조, 「남북경제교류의 민족내부거래성과 대우문제」, 한국법제연구원, 2002.

미국-모로코 FTA 협정문

미국-싱가포르 FTA 협정문.

미국-호주 FTA 협정문.

박노형, “WTO 체제에서의 남북한 무역거래의 지위”, 「법조」제49권 11호(2000.11).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2006년 8월 10일자, 2007년 6월 26일자.

외교통상부, 「한-미 FTA 관련 통계」, 외교통상부, 2006.8.

유현석, “한미 FTA의 정치적 의미: 영향과 고려사항”, 「한미 FTA 공청회 자료집」

2006.2.2.

전국경제인연합회, 「우리나라 FTA 로드맵과 보완과제」, 전국경제인연합회, 2004.11.

정인교, 조정란, 방호경, 김석오, 「우리나라 FTA 원산지 규정(ROO) 연구 및 실증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05.11.

한국경제신문, 2005년 4월 1일자.

한국무역협회, “한미 FTA와 제조업”, 「한미 FTA 공청회 자료집」, 2006.2.2.

한국-미국 FTA 협정문.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한미 FTA 국민보고서」, 그린비, 2006.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알기쉬운 섬유산업 FTA”, 「FTA EXPO 2007」, 2007.11.28.

한국-싱가포르 FTA 협정문.

한국-칠레 FTA 협정문.

Jagdish Bhagwati, 「Free Trade Toda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2.

NAFTA 협정문.

WTO Agreement on Rules of Origin.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www.usitc.gov/tata/hts/

WTO 홈페이지 http://www.wto.org/english/tratop_e/region_e/region_e.htm

산업연구원 산업통계정보사이트 www.istans.or.kr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kofoti.or.kr/info/textile01.php>